

수입물품 신고수리전반출 업무처리 지침

I. 배 경

-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리전반출 요건 완화

II. 관련규정

□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수입신고물품을 수리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음

□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봄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38조(신고수리전반출)

- 수리전반출승인 사유

1.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되어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 조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 중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않은 물품
3.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4.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5.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46조(징수형태)

- 신고인은 아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

1. 신고납부(담보면제), 2. 신고납부(신용·포괄담보), 3. 신고납부(개별담보), 4. 신고납부(신고수리전 납부), 5. 부과고지(담보면제), 6. 부과고지(신용·포괄담보), 7. 부과고지(개별담보), 8. 부과고지(개별담보), 9. 과세보류, 10. 일괄납부(사후정산), 11. 월별납부, 1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Ⅲ. 지침내용

□ 적용대상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 「미조립상태 분할선적물품」 범위 및 적용

○ 「분할선적물품」의 정의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각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서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물품

○ 수리전반출 대상 : 아래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

[HS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2(가)]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분할해서 수입되는 물품

③ 수입통관 후 단순조립(연결, 리벳, 용접 등) 이상의 추가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④ 단일계약에 의해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다국적기업의 본·지사해당하는 경우 동일수출자로 인정)

○ 승인신청 시 요건확인

① 수출국에서 선적전에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또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물품계약서 등)

② 수입통관 후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징구(제품명세서, 카탈로그, 설치시공서 등)

③ 포장, 운송상 편의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분할선적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완성품과 부분품 세율이 다른 경우, 필요시 현장확인 등 실시

□ **수리전반출 관련 징수절차**

- 수리전반출 물품에 대하여 “과세보류” 적용을 배제하고, 분할선적물품 등에 대하여는 **일괄고지절차** 적용
- 수리전반출승인신청시 과세보류가 아닌 일반과세 징수형태로 신고
- * 신고한 세액은 납부조치하고 차액(추정세액-신고세액)은 담보제공

〈 담보제공(관세법 제252조) 방법 〉

구 분	내 용
추정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전반출사유 종료시 예상 세액이 납세신고액보다 큰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예상세액 예시) 기준가격 적용세액, 품목분류상 경합세번 중 고세율 적용세액, 감면 미적용시 세액, 실행세율 적용세액 등
담보금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월납한도액 제공시 : (추정세액-신고세액)×1 • 기타 담보 제공시 : (추정세액-신고세액)×1.03
담보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전반출사유 예상 종료일로부터 1월을 추가한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결정
담보제공 생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제공 생략

- 다만, 분할선적물품(수입통관고시 제38조제1항제1호) 및 비축물자(제2호)에 대하여는 **일괄고지**

- 분할선적 수입물품은 최종 선적분 수입시 완성품으로서 세번과 감면여부 결정 후 일괄고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 수리전반출된 경우 실수요자가 결정된 후 일괄고지

- * 신고세액과 차액(추정세액-신고세액)을 합산한 세액 담보제공, 담보제공 생략업체는 담보 미제공

□ 수입신고처리 세부사항

- 신고방법 [분할선적물품(수입통관고시 제38조제1항제1호)만 해당]
 - (HS번호) 분할수입신고시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
 - (금액·중량) 분할하여 수입신고시 완성품에서 분할신고되는 비율만큼 **금액과 중량을 안분**하여 신고
- 징수형태
 - 분할선적 및 비축물자* : **01**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호 및 제2호
 - 그 외 : 11, 12, 13, 14, 18, 21, 22, 23, 24, 43

IV. 시행일 : 2022. 9. 19.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수리전반출승인 신청분부터 적용